

교육사회위원회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  
검 토 보 고 서

1993. 11.

교육사회위원회

# 목 차

I.	'92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	370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370
	2. 세입결산 현황 -----	371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372
	가. 일반회계 -----	372
	나. 특별회계 -----	373
	4. 세출결산 현황 -----	374
II.	보사환경국 소관 -----	375
	1. 일반회계 세출 현황 -----	375
	2. 검토 의견 -----	376
III.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381
	1. 세입세출결산 현황 -----	381
	2. 검토 의견 -----	382
IV.	가정복지국 소관 -----	383
	1. 일반회계 세출 현황 -----	383
	2. 검토 의견 -----	384

# I . '92년도세입 · 세출결산총괄

##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산현액 (1)	세 입 결 산 액 (2)	세 출 결 산 액 (3)	비 율			세 계 임 여 금
				1 : 2	1 : 3	2 : 3	
합 계	547,735	568,592	446,851	104	82	79	121,741
일 반 회 계	307,211	337,154	280,338	110	91	83	56,816
특 별 회 계	240,524	231,438	166,513	96	69	72	64,925
○ 공 기 업							
- 공영개발사업	91,869	85,158	59,896	93	65	70	25,262
- 지역개발기금	79,516	76,354	42,319	96	53	55	34,035
○ 중 기 관 리	1,234	1,255	992	102	80	79	263
○ 주 택 사 업	1,347	2,055	909	153	68	44	1,146
○ 의 료 보 호	12,507	12,520	12,327	100	99	99	193
○ 새 마을 소득 지원	98	98	41	101	42	42	57
○ 공 유 림 관 리	671	734	277	109	41	38	457
○ 지 방 양 여 금	53,282	53,264	49,752	99	93	93	3,512

## 2. 세입결산 현황

( 단 위 : 백 만 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징 결 정 수 액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 수 납 액
합 계	547,735	590,188	568,592	120	21,476
일 반 회 계	307,211	354,306	337,154	120	17,032
특 별 회 계	240,524	235,882	231,438	-	4,444
○ 공 기 업					
- 공 영 개 발 사 업	91,869	89,594	85,158	-	4,436
- 지 역 개 발 기 금	79,516	76,354	76,354	-	-
○ 중 기 관 리	1,234	1,263	1,255	-	8
○ 주 택 사 업	1,347	2,055	2,055	-	-
○ 의 료 보 호 기 금	12,507	12,520	12,520	-	-
○ 새 미 율 소 득	98	98	98	-	-
○ 공 유 립 관 리	671	734	734	-	-
○ 지 방 양 여 금 관 리	53,282	53,264	53,264	-	-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477억 3천 5백만원에 대하여 107.8%에 해당하는 5,901억 8천 8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음.
- 예산보다 초과징수 결정된 424억 5천 3백만원은 일반회계가 110.9%인 470억 9천 5백만원, 특별회계는 예산보다 46억 4천 2백만원이 적게 징수결정 되었음.
- 미수납액 214억 7천 6백만원은 일반회계가 79.3%인 170억 3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44억 4천 4백만원으로 20.7%임.
- 불납결손액은 일반회계가 1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음.

###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현황

#### 가.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불 결 손 액	미 수 납 액
합 계	307,210	354,306	337,154	120	17,032
지 방 세	81,360	125,086	108,761	117	16,208
세 외 수 입	84,131	87,286	86,459	3	824
○ 재산임대수입	63	68	67	-	1
○ 사용료 수입	3,231	3,558	3,536	-	22
○ 수수료 수입	2,102	2,272	2,272	-	-
○ 사업장 수입	722	735	735	-	-
○ 이 자 수 입	1,984	2,766	2,766	-	-
○ 재산매각수입	3,429	3,351	3,250	-	101
○ 이 월 금	65,070	65,070	65,070	-	-
○ 부 담 금	4,786	5,195	5,003	-	192
○ 잡 수 입	2,644	3,880	3,671	-	209
○ 과년도수입	100	391	89	3	299
지방 교부금	84,321	84,321	84,321	-	-
보 조 금	57,398	57,613	57,613	-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072억 1천 1백만원에 대하여 115.3%에 해당하는 3,543억 6백만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며,
- 예산보다 470억 9천 6백만원이 초과 징수결정 되었고.
- 징수결정된 3,543억 6백만원중 95.2%에 해당하는 3,371억 5천4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71억 5천 2백만원중 결손처분된 1억 2천만원을 제외한 170억 3천 2백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되었음.
- 미수납액 170억 3천 2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4.8%로써 채무자 재력부족과 재산압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나.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불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240,524	235,882	231,438	-	4,444
공영개발사업	91,869	89,594	85,158	-	4,436
지역개발기금	79,516	76,354	76,354	-	-
도로보수중기 관 리	1,234	1,263	1,255	-	8
주 택 사 업	1,347	2,055	2,055	-	-
의료보호기금	12,507	12,520	12,520	-	-
새마을소득지원	98	98	98	-	-
공유림 관리	671	734	734	-	-
지방양여금관리	53,282	53,264	53,264	-	-

- 공영개발사업의 7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2,358억 8천 2백만원에 대하여 98.1%인 2,314억 3천 8백만원이 수납되었음.
-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액 2,405억 2천 4백만원에 대하여 98.1%에 해당하는 2,358억 8천 2백만원을 징수결정 하므로써 46억 4천 2백만원이 미달되게 징수결정되었는 바, 그 내용은 공영개발사업 22억 7천 5백만원, 지역개발기금 31억 6천 2백만원, 양여금관리 1천 8백만원으로 기인하고 있음.
- 미수납된 44억 4천 4백만원은 공영개발사업의 가경 2지구 택지매출 미수금 44억 3천 6백만원과 중기운영관리 사업의 차선도색수입증 도로공사의 사고이월금으로 준공되지 않은 8백만원임.

#### 4.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년도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547,735	460,301	446,851	16,544	84,339
일 반 회 계	307,211	287,709	280,338	8,948	17,924
특 별 회 계	240,524	172,592	166,513	7,596	66,415
○ 공 기 업	171,385	104,788	102,215	4,086	65,083
-공영개발사업	91,869	62,468	59,895	4,086	27,887
-지역개발기금	79,516	42,320	42,320	-	37,196
○ 중 기 관 리	1,234	992	992	-	242
○ 주 택 사 업	1,347	909	909	-	438
○ 의 료 보 호	12,507	12,327	12,327	-	180
○ 새마을소득지원	98	41	41	-	57
○ 공유림 관리	671	277	277	-	395
○ 지방양여금관리	53,282	53,258	49,752	3,510	20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5,477억 3천 5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468억 5천 1백만원으로서 평균 81.6%를 집행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대 결산액이 91.3%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 결산액이 69.2% 임.
- 일반회계는 대체로 정상적인 결산이라 할 수 있으나,
- 특별회계는 집행에 부진을 보였는데, 공유림 관리는 41.2%만 집행 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은 53.2%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예비비와 석산개발사업 용자신청 포기로 361억 5천 9백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5.2%만 집행되었는데 이는 청사부지 취득가격 재평가와 예비비 249억 9천9백만원이 미집행된데 기인하고 있음.

## Ⅱ. 보사환경국소관

### 1. 일반회계 세출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27,355	26,879	14	463	
복지사업비	사회복지증진	4,090	3,957	-	133
	노정관리	243	237	-	6
	영세민보호	15,108	15,102	-	6
	의료보험	359	314	-	45
	부랑인보호	837	837	-	-
	재해구호	228	228	-	-
보건위생비	보건의정사업	178	140	-	38
	보건기관운영	535	531	-	4
	보건환경연구원운영	2,229	2,046	14	169
	위생관리	296	264	-	32
	환경보호	3,252	3,223	-	29

○ 보사환경국소관의 '92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73억 5천 5백만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072억 1천 1백만원의 8.9%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현액에서 98.3%인 268억 7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천 4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7%에 해당하는 4억 6천 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2. 검토 의견

'92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3억 5천 5백만원 중 1.7%에 해당하는 4억 6천 3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1천 4백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 예산집행 잔액	3억 5천 1백만원 ( 76 % )
- 예산 절감액	7천 7백만원 ( 17 % )
- 집행사유 미발생	3천 2백만원 ( 7 % )
- 계획변경 취소	3백만원 ( - % )

으로 각각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들의 '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하여 불용액을 중심으로 예산 미집행 실태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첫째, 사회복지증진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0억 9천만원중 3.2%에 해당되는 1억 3천 3백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1억 2천만원
- 예산 절감액	1천 3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6십만원

으로 인건비와 각종 수당에서 1억 5백만원, 수용비 및 보상금, 기타 등에서 3백만원과 국고보조사업비 미교부 및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천 2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관서당경비 등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된 1천 3백만원, 장애인복지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둘째, 노정관리비는 6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3백만원
- 예산 절감액 5십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2백만원

등으로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집행잔액 3백만원과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액, 직업안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2백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나타나 있음.

셋째, 영세민보호비에 있어서는 6백만원이 불용처리 된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5백만원
- 예산 절감액 1백만원

으로 정보비 2백 5십만원, 보상금 2백 5십만원의 집행잔액과 정보비 1백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발생한 것임.

넷째, 의료보험비는 예산현액 3억 5천 9백만원 중 12.5%에 해당하는 4천 5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는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의 집행잔액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소요경비를 정확히 판단치 못하여 계상된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부랑인보호 사업비는 불용액이 없으며,

여섯째, 재해구호비도 소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일곱째, 보건의정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 7천 8백만원중 21.3%에 해당하는 3천 8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1천 5백만원
- 예산 절감액 1천 5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5백만원
- 계획변경 취소 3백만원

등으로 정보비 9백만원과 전염병환자 미발생 등 국고보조금의 미교부에 따른 도비보조금 6백만원이 집행잔액을 발생되었고, 정보비, 수용비, 여비등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절감 된데 기인하고 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된 위원회 미개최 2백만원, 재료비구입비 3백만원과 계획변경 취소된 일용인부임 2백만원, 기타수당 1백만원 등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여덟째, 보건기관운영비는 4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3백만원
  - 예산 절감액 1백만원
- 으로 건강관리협회 생화학자동분석 기구 구입비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으로 발생한 것임.

아홉째, 보건환경연구원운영비는 예산현액 22억 2천 9백만원중 7.5%에 해당되는 1억 6천 9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1천 4백만원이 이월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1억 3천 7백만원
- 예산 절감액 3천 2백만원

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 인건비, 수당 등에서 1천 4백만원, 자산취득비 2천 2백만원, 시설비 1천 7백만원, 물품구입비 7천 2백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예산절감액은 관서당경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대수선비 등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한 3천 2백만원으로 나타나 있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물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열번째, 위생관리비는 예산현액 2억 9천 6백만원중 10.8%에 해당하는 3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5백만원
- 예산 절감액 3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2천 4백만원

등으로 정보비 4백만원, 행정사무기기 구입비 1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예산절감액은 국내여비, 정보비, 물품구입비에 서 각 1백만원씩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된 3개사업비 2천 4백만원으로 전통음식점 지정업소 간판제작비와 심야영업신고 보상금, 간이급수시설 수원 이전비용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사업판단에 정확을 기하지 못한 것인지? 사업실적 부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열한번째, 환경관리비는 2천 9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1천 8백만원
- 예산 절감액 1천 1백만원

으로 정보비 1백만원, 공해장비 입찰잔액 3백만원, 보상금 6백만원, 민간경상보조 미교부 4백만원, 물품구입비 3백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국내여비, 선박비, 정·판공비 등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과 용역비 4백만원 등을 예산절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불용액중 76%에 해당하는 3억 5천 1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는 세출 예산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 운영하고 예산성립후 여건변동 등 사유 발생시는 이를 조정 부족재원에 활용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펴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집행사유 미발생은 대부분이 각종위원회 미개최와 제천 백운면 간이급수 시설 이전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미집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등

이,밖에도 몇가지 문제점으로는,

- 판공비성격의 보상금 집행 사례
  - 환경관리비 중 연말 위문금(미화요원 등내의) 13,580천원
- 예산 전액 미집행 사례
  - 보건복지사업비중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8,224천원
- 국고보조금사업 집행과다 발생 (제도개선, 수혜범위 확대, 지방비 부담율 조정 등 건의로 사업운영에 적절할 것)
  - 생보자 거택구호비 (대상감소) 1억 7백만원
  - 생보자 직업훈련 9천 6백만원
- 사업추진 부진 사례
  - 청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5% 진도)
- 보조사업의 목표설정 부적정
  - 저소득 직업훈련 (사업량 : 486명, 676백만원  
집행 : 378명, 231백만원)

등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Ⅲ.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 결산세입 총괄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 산 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비 고
합 계	12,507	12,519	12,519	
이 월 금	142	142	142	
용자금액수수입	15	27	27	
전 입 금	2,274	2,274	2,274	
잡 수 입	981	981	981	
국고 보조금	9,095	9,095	9,095	

##### ○ 결산세출 총괄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 산 액	현액산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12,507	12,507	12,327	-	180
기 금 운 영 비	104	104	83	-	21
사 무 비	72	72	69	-	3
의 료 보 호 비	12,203	12,203	12,175	-	28
예 비 비	128	128	-	-	128

## 2. 검토의견

'92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125억 7백만원으로 도 전체예산 5,477억 3천 5백만원의 2.3%, 특별회계예산 2,405억 2천 4백만원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불용액 원인별로 살펴보면,

### ○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25억 7백만원 보다 1천 2백만원을 초과징수 결정하여 125억 1천 9백만원 전액을 수납하여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됨.

### ○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25억 7백만원 중 1.4%에 해당하는 1억 8천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잔액 4천 1백만원

은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잔액 1천 6백만원과 의료보호진료비 집행잔액 2천 4백만원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예산절감액 5백만원

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발생한 것임,

- 지급사유 미발생 5백만원

은 의료비 본인부담 대불금으로 계상한 것이나, 대불 희망자가 없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음.

- 기타 1억 2천 9백만원

은 예비비로 집행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음.

이상과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전체 불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은 별 무리가 없는 결산으로 사료되나, 집행사유 미발생된 진료비, 대불금은 예산계상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 불용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IV. 가정복지국소관

### 1. 세출총괄

( 단 위 : 백 만 원 )

과 목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5,693	15,485	-	208	
가 정 복 지 국 소 관 비	가 정 의 려	4	3	-	1
	아 등 복 지	7,134	7,071	-	63
	노 인 복 지	4,560	4,531	-	29
	부 녀 복 지	2,139	2,107	-	32
	청 소 년 복 지	1,406	1,356	-	50
	여 성 회 관 운 영	450	417	-	33

- 가정복지국소관의 '92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56억 9천 3백만원으로  
도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027억 1천 1백만원의 5.1%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예산현액에서 98.7%인 154억 8천 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  
며, 1.3%에 해당하는 2억 8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2. 검토의견

'92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6억 9천 3백만원 중 1.3%에 해당하는 2억 8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 |            |                    |
|------------|--------------------|
| - 예산집행 잔액  | 5천 6백만원 (26.9%)    |
| - 예산절감액    | 2천 9백만원 (13.9%)    |
| - 집행사유 미발생 | 1백만원 (0.4%)        |
| - 계획변경 취소  | 1억 2천 2백만원 (58.6%) |

으로 각각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9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기초로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불용액을 중심으로 세항별로 살펴보면,

첫째, 가정의례비는 1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는 소액의 집행잔액, 예산절감액과 5십만원의 보상금이 계획변경 취소되어 발생한 것임.

둘째, 아동복지비는 6천 3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           |         |
|-----------|---------|
| - 예산집행 잔액 | 1백만원    |
| - 예산 절감액  | 1백만원    |
| - 계획변경 취소 | 6천 1백만원 |

등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등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계획변경 취소 6천 1백만원은 보육, 장애아시설 기능보강 등의 국비 보조금으로 국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내시되어 발생한 것임.

셋째, 노인복지비는 2천 9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1천 3백만원
- 예산 절감액 8백만원
- 계획변경 취소 8백만원

등으로 인건비,수당등 6백만원, 정보비 3백만원, 물품구입비,수용비 등 4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정보비 2백만원,관서운영비 5백만원 등이 절감되었고, 국비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내시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8백만원이 계획변경 취소되었음.

넷째, 부녀복지비는 3천 2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1천 1백만원
- 예산 절감액 5백만원
- 계획변경 취소 1천 6백만원

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기타수당,임차료,보상금,보조금 등의 집행잔액과 국내여비,수용비,판공비등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액이 발생되었으며, 계획변경 취소로 불용처리된 국내여비 7백만원,기타수당 3백만원, 보상금 등 주로 도청 여직원 수련회 계획이 취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음.

다섯째, 청소년복지비는 5천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9백만원
- 예산 절감액 4백만원
- 집행사유 미발생 1백만원
- 계획변경 취소 3천 5백만원

등으로 정보비 2백만원,기타수당 3백만원,수용비및수수료 2백만원, 보조금 2백만원등의 집행잔액과 수용비등 예산절감액, 기타수당이 1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계획변경취소 3천5백만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국비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내시되는데 기인하고 있음.

여섯째, 여성회관운영비는 예산현액 4억 5천만원중 7.3%에 해당하는 3천 3백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 예산집행 잔액 2천 2백만원
- 예산 절감액 1천 1백만원

으로 수당등 인건비 1천 4백만원, 공공요금·차량비·관서당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대수선비·재료비·수용비·공공요금등에서 불용액으로 발생된 것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2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적정을 기하여 집행한 것으로 사료됨.

집행잔액은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이며, 예산절감액 또한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한 것이나, 계획변경취소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따른 국비의 감액내시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일부 국내여비, 기타수당,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몇가지 문제점으로는,

○ 판공비성격의 보상금 집행

- 노인복지 등 9개 항목 (격려금, 위문품 지급 등) 14,755천원

○ 세출예산 불용처리 사례

- 충주화장장(화장로 교체) 310,000천원

국고보조금이 연말(12. 24)에 교부된 예산이라도 계속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

○ 사업추진 부진

- 여성회관 9개소 (진도 50%)

○ 국고사업 집행잔액 과다 (제도개선 건의)

-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대상감소)	5천 8백만원
- 보육시설 운영	3천 6백만원
- 아동시설 운영	4천 3백만원
- 장애인시설 운영	7천 8백만원
- 노령수당	3천만원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